

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10. 1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4.

(제262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행정관리국장

나. 제안이유

새로운 위원 모집이 어려워 주민자치회 구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 수가 최소 정원(30명)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,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 공개 모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나,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 수가 최소 정원에 미달한 경우,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 가능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8. 12. ~ 9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가. 제안취지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위원 모집이 어려워 주민자치회 구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수가 최소 정원(30명)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,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 공개 모집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안 제10조제3항 신설
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,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

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자원의 한계,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보장,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 등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됨

- 타 자치구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1회 연임은 우리 구를 포함해 7개구, 2회 연임 4개구, 연임을 마치고 신규 신청이 가능한 10개구, 임기 2년으로 연임규정이 없는 1개구가 있으며, 각 자치구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운영 중임

다. 종합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몇몇 사람이 아닌, 지역사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통해 선정 및 운영하려는 당초 조례 취지를 살리고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도 다시 신규위원 신청자격을 두는 기존 자치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규 위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후 정원의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임이 끝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